

잡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20. JAN + FEB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庚子年 2020

안녕하십니까?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영민함의 상징인 흰 쥐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12년째가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12,575명의 변호사들은 범무법인을 비롯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실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이 비싸고 부유층 자제만 입학한다',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 등록금의 30%인 장학금 가운데 무려 77%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를 해마다 10~20%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입학인원을 전체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도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법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순석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 010 hot issue
- 012 power interview
이탁건 변호사
- 016 letter from
김용석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
- 020 real story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정상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진주
- 026 contest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030 happy lawschool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이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건영
- 036 opinion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호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 043 book
- 044 health mentoring
- 046 movie talk talk
- 050 culture
- 052 akls news
- 054 out campus
- 055 quiz

2020. jan + feb

발행일 2020년 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지난 12월 10일(화)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12.11(수))〉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 저스티스 리그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 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10여 년 이상의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 예비시험 제도는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도입할 경우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확보와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특히 각 대학별로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중 취약계층 장학금을 70%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2019년 기초~소득3분위까지의 학생 1,040명(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그밖의 소득구간의 학생 또한 학교별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절차를 두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정원감축조치 및 인가취소,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7% 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1,467명 입학('09년~'19년)]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도 로스쿨에 입학하게 됨. [850명 입학('12~'19학년도)]
 - 강원, 제주(2개교):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입학자의 20% 이상 선발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위해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입학서류 내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였으며, 기재할 경우 실격 조치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 정성평가(서류, 면접)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서류) 철저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 (면접) 가번호 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 진행

셋째,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이다.

○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극소수 인원만이 합격할 수 있는, 구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으로 구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폐해를 재생산하고 있다.

※ 일본: 준칙주의(로스쿨 자율 설치), 법대 유지, 변시 합격자 수 통제, 예비시험 및 변시낭인 발생
⇒ 교육 파행 진행

※ 한국: 인가주의(정부 인가 후 설치), 법대 폐지
⇒ '변시 합격자 수 통제'로 수급 조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실현

○ 또한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실무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째,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예비시험 도입 시 시험기술에 능한 상위 대학 재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수단, 즉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수 인재들이 예비시험으로 쏠릴 경우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경제적인 약자에게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더욱 심각한 형태로 답습하게 할 것이다.

※ 예비시험은 정규교육이 아닌 우회로이므로 신림동 사교육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격률이 2~3%밖에 되지 않는 사법시험처럼 합격 기약이 없는 예비시험에 젊은 인재들이 뛰어들어 '고시망국론'이 재현될 것임.

○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부 때부터 각 전공과목에서 좋은 학점을 얻은 결과, 과거에는 비 인기 학과였던 '철학과' 등이 인기전공으로 부상하는 등 각 학문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어 전공에 관계없이 시험 준비만을 하게 된다면 대학의 전공교육이 무지고 학부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출신대학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의 약 2.5배로 확대되는 등 법조인 배출대학이 다변화되었음. 예비시험이 도입될 경우 사법시험과 같이 상위권 대학 출신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또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음.

사법시험 합격자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은 40개교('02~'14년 평균) ※상위 5개 대학 점유율(71%)		출신대학은 102개교('11~'15년 평균) ※상위 5개 대학 점유율(59%)

다섯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은 약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퇴행적인 방향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오늘날의 법조인은 '개천에서 난 용'의 신분이 아니라,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직업'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법전문 제도가 '개천에서의 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저스티스리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현재 변호사시험이 완전히 자격시험화 되지 못한 채 그 합격자 수에 대한 통제가 끊임없이 기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합격률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로스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12.12(목))〉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1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 2 자유한국당과 일부 법조인들은 시험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년 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
- 3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프로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5분위까지도 장학금이 나올 정도다. 반면 이전 시험으로만 법조인 배출이 결정되던 시절에는 이러한 보호 제도가 일절 없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 심지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고 실토하는 실정이다.
- 5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하다. 그런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할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해 예비의사시험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 예비교사시험을 만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우리 협회는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로스쿨 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양성 제도가 실행되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협회는 이에 동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로스쿨協 “한국당,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시도 철회” 촉구

- 한국당, 로스쿨 안가도 변시 자격 주는 예비시험법안 발의
- 로스쿨 “사법개혁 취지 훼손·고시낭인 폐해 되풀이” 우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고시낭인’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사법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에 개정안 철회와 로스쿨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참 등을 촉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다시 사시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했다. 저스티스리그 측은 “2017년 폐지된 사시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전에서 용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입학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뤄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기사 출처: 조선예류

issue 0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기원 전 대법관 이름 단 도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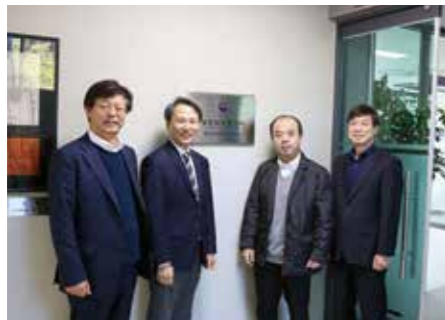
지난 11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배기원 전 대법관의 이름을 단 '배기원 도서관'이 개관했다. 배 전 대법관의 법조인으로서의 업적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부 실천을 기리기 위해서다. 영남대 법전문원은 기존 법학전문도서관을 배기원도서관으로 명명하고, 동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기원 전 대법관과 영남대 서길수 총장, 이동형 법학전문대학원장, 배병일 도서관장, 정태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춘희 대구지방법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issue 02

충남대 법률센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첫 지정

충남대 법률센터가 대학 기관 중 처음으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 11월 26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헌판식을 개최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앞으로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 법률신문 2019-12-02



issue 03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지난 1월 3일(금)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본선 및 결선이 진행됐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와 닮은 사건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로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2개의 분야에서 120개팀(360명)이 열린 경연을 펼쳤고, 결선에 오른 12개의 팀 중 서강대학교 법전문(민사부문)팀과 서울대학교 법전문(형사부문)팀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issue 04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시행



지난 1월 7일(화)에서 1월 11일(토)까지 4일간(9일: 휴식일)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됐다. 제9회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출원자 3,617명보다 25명 줄어든 숫자다. 제8회 시험까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험부터 전북대와 원광대 법전문이 있는 전북 전주 지역에 시험장이 추가되어, 시험장은 총 9개로 늘어났다.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과 전문적 법률에 관한 과목(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공·형·민사법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사진출처 : 법률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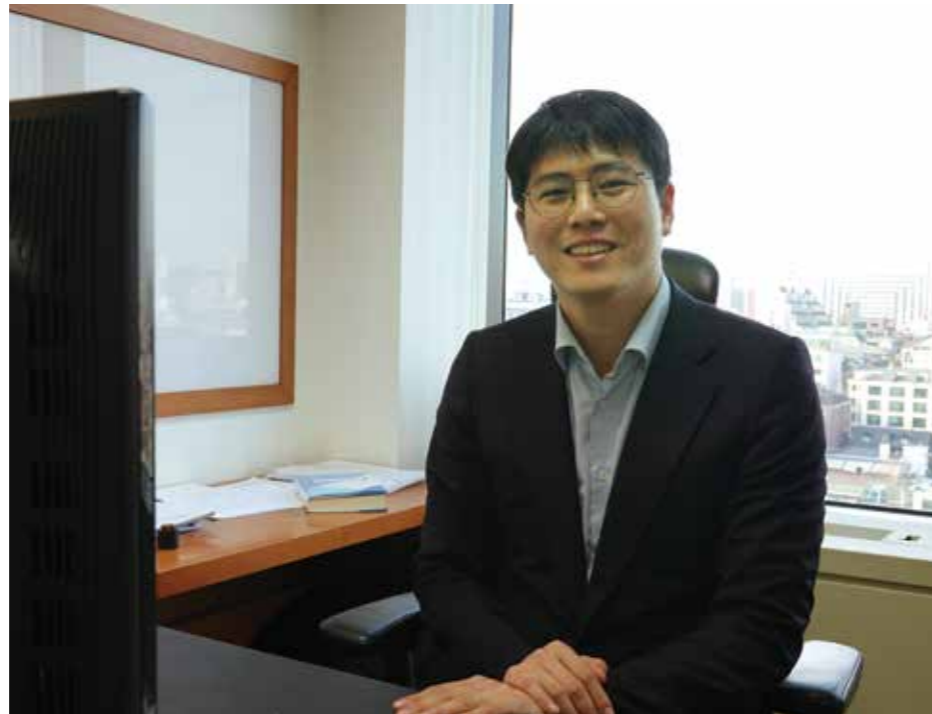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시험 기간 중 서울권역 시험장과 지방권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법전문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회원들도 간식과 핫팩을 나눠주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4일(금)로 예정되어 있다.

‘동쪽의 샘’이라는 뜻의 재단법인 동천은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담아 설립되었다. 재단이 풀고 있는 뜻처럼, 동천은 지난 10년 동안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공익법률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로펌의 공익활동을 선도해 왔다. 동천에서 난민과 이주 외국인을 돕고 있는 이탁건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



학부에서도 법학을 전공했나? 학창 시절에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다.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고,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인지 진보적 사회진출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고,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된다면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소 막연한 계획이 있었다.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 했다(웃음). 그러던 중에 로스쿨

이 생겼고,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려면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관련 교재를 읽고 시험을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당시 대한항공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직

원들은 항공권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미국까지 가서 시험을 본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었다. 퇴근 후 시간을 내어 틈틈이 공부했고, 그 해 여름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마 로스쿨에서 우수한 교수님들께 미국법 수업을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 한국 변호사시험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공부할 양이 매우 적었고,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닌 일정 자격만 갖추면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익 변호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로스쿨 졸업 후 첫 번째 직장이었던 대한항공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회사에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애정도 많았다. 그런데 2년 정도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 10년,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 개인적 역량이야 향상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 아래 동천으로 옮기게 됐다.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단체 중에서 ‘재단법인 동천’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끔씩 내게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말한다. 물론 월급의 감소, 불투명한 미래 등은 중요한 고민 요소 중 일부였지만,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 변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처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이라고 포장하고 싶지 않다. 나의 역량과 내가 원하는 것, 동천에서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을 뿐이다.

‘재단법인 동천’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등 7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이탁건 변호사(오른쪽)

개 영역과 NPO(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법률지원, 정책·법제도 개선,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로펌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로펌의 안정적 지지에 기반하여 별도 조직에 소속된 공익변호사들이 풀타임으로 공익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된 이후 다른 로펌들도 비슷한 모델을 많이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국내 11개의 법무법인이 모여 로펌공익네트워크¹⁾를 결성해,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동천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비영리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특히 난민, 이주민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난민, 이주민에 관련된 업무로는 상담, 소송(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청 단계에서의 이의신청 업무가 포함된다.

난민, 이주민 문제는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는 난민 인권단체, 이주민 인권단체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익활동의 저변과 외연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1)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교환과 증개 및 교육, 공익단체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울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1개 주요 대형로펌이 공동으로 구성한 연합체다.

대형로펌과 로펌이 세운 공익재단·사단법인 등이 공익 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꽤 고무적이다.

물론이다. 이를테면 초창기에는 난민 활동을 열심히 하는 로펌으로 태평양-동천이 유일했지만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지평(사단법인 두루)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다수의 로펌들과 난민인권단체가 MOU를 체결하면서, 로펌들은 신규로 채용된 난민 관련 활동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입하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을 통해 대형로펌들도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매우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에 선한 의도를 가진 공익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보람은?

현재 우리나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업 공익 변호사는 약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나처럼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공익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규모는 작는데 단순히 서면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 기획, 홍보, 총무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발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지 않을까?(웃음)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률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139위로 난민 수용국 가운데서도 꼴찌를 다투고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내지는 불법 체류자들이 악의로 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는 것을 난민 수용률이 낮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많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제3기 NPO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탁건 변호사(왼쪽)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 시네마토크에 참석해 난민 아동 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탁건 변호사(왼쪽)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이 꼴찌를 다투는 정도면 단순히 허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의 사례 등 다른 나라에서는 높은 비율로 난민이 인정되는 집단군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과정과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술상의 일부 불일치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본국에 들어가도 정부가 주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난민 인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을 만큼 난민을 혐오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난민, 이주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배경은 무엇이고, 해법과 대안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난민, 이주외국인을 '낯선 이방인'

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970~8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적 특성상 남미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이들을 반대하는 여론이 드세게 일어나기도 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주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진보적인 주 가운데 하나이고, 이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느 정도 극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민단체들과 특히 국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주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있다. 외국인 혐오가 문제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경제 구조상 분명히 피해를 받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구조가 그만큼 성숙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구조상 계층적인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렇게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과 관련된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주민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주 외국인들은 애초에 소수화된 집단이고,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시위참가나 시위 조직 등을 할 수 없고, 특히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법률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시혜적 대상'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있어, 그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면 '배은망덕하다', '주제 넘는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00만 명 가량이

다.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인구가 많은 숫자인데, 이정도 규모의 내국인에게 시행되면 난리가 날 차별적인 법 정책이 너무나도 쉽게 시행된다. 이것이 다시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법률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로스쿨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익변호사들이 금전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중시하고 있지만, 금전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건 개인의 삶에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룰 것이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웃음). 하지만 사회생활을 안 해본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어느 분야든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꼭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공익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동천 NPO법률지원단²⁾에서도 비영리 법인을 돕고 싶은 일반 변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1~2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도 여러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 변호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선배 모델이 많지 않다. 물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서 나보다 10년 먼저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 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공익변호사의 길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랬으며, 사실 지금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웃음).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서 10년 뒤에도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목표이다.

2) 동천NPO법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으로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체력을 기르는 것이 곧 시험 합격의 지름길’



법무법인 승인

김용석 변호사

열탕같이 더웠던 여름이 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을 보내니 어느새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가득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항하기 위해 신체를 꼭꼭 감싸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손을 꼭 붙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특히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감성에 젖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군대에서 눈을 치운 기억이 되살아나 떨어지는 눈만 보면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저로서는 군대에서 눈을 치운 기억(강원도 고성에서 근무해서 2m에 달하는 눈도 치워 봤음에도)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닌 변호사 시험을 치른 2016년 겨울이 생각납니다. 당시의 기억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추억으로 남아 기억의 한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겨울 중 가장 끝판왕인 1월에 실시되는데, 생각만 해도 몸에 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1. 2.부터 1. 7.까지 일주일 동안 대전에 소재한 충남대학교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렀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 역시 시험장에 들

어서면 수험생들 모두 책을 펴고,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 시험문제에 대한 설렘이 모두 공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받는 순간 머리는 차갑게 손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눈은 문제를 빠르게 따라가면서 손은 더 빠르게 쟁점을 기재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며,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5일 동안 힘들게 4면의 답안지를 작성하면 변호사 시험이 끝이 납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1년간 변호사시험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5일은 다시 견딜 자신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정신적 소모가 매우 큰 것이 변호사시험입니다. 날짜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고도의 긴장 상태로 시험을 4일간 치러야 하는 시험은 아마 변호사시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객관식 시험 외에는 답안지를 손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나중에는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 답을 알아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니 사실상 체력도 하나의 시험과목인 셈입니다.

그래서 시험기간 중 많은 수험생들이 에너지드링크에 의존하거나 링겔을 맞아 그 순간을 극복하고자 긴급처방을 합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소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겨울에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도 시험장에 가지 못하거나 답안지로 현출시키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열심히 쌓아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교 내에 농구 동아리와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밤에는 대운동장에 설치된 트랙을 뛰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체력을 기르고자 의도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선·후배들과 쉽게 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쌓아둔 체력이 3학년 때와 변호사 시험을 볼 때 가장 빛을 발하여, 다른 수험생보다 좀 더 체력적으로 여유롭게 시험에 임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기간 중 체력적으로 힘들어 시험을 중도포기 하거나 시험 중 건강악화로 시험을 끝까지 치르지 못하

는 수험생들이 매년 각 시험장마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가 응시한 해에는 친한 동기 형이 밤새 공부를 하고 잠깐 잠들었다가 다음 날 1교시 객관식 시험에 참석하지 못해 자동 불합격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시험을 앞두고 감기 등 병을 앓거나 시험 기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도 흔한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답안 작성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하도록 시험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나 답안을 채점하는 채점자들 모두에게 매우 반가운 일인데 컨닝, 해킹 등의 우려나 시험에 응시한 수천 명에게 컴퓨터를 제공해야 하는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도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컴퓨터 답안작성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십 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에 여전히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데 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겨울에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두어도 시험장에 가지 못하거나 답안지로 현출시키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열심히 쌓아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기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합시다!

김용석 변호사

법무법인 승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변호사의 프로보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김수연 변호사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인 ‘Pro Bono’의 뜻을 검색하면, ‘미국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칭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프로보노’라는 단어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다가 법률뿐 아니라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고,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등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도 어쩌면 근시일내에 함께하게 될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곁들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센터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지원하는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센터의 법률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일반 변호사들이 피해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일종의

자발적인 봉사모임입니다.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각자의 본업은 따로 있으나, 퇴근 후 저녁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여 센터측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며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해왔고, 현재까지 여러 변호사님들이 열정적으로 관련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약 5년 동안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며 법률지원단의 다양한 활동 중에 성착취 피해청소년들의 양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걸린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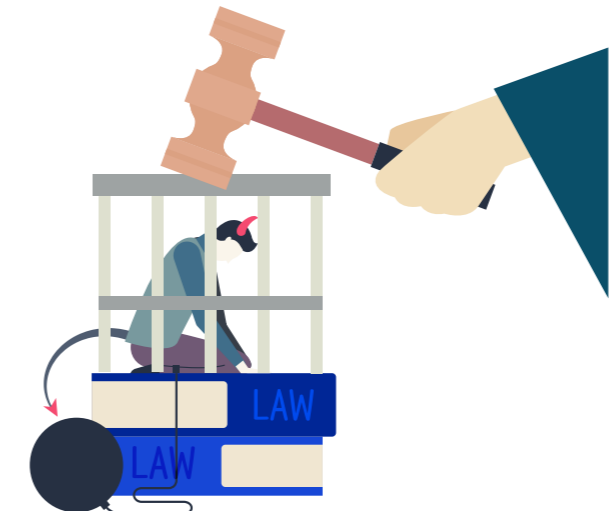


산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입법연구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법개정 연구를 하며 관련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의원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는 작업을 하고, 담당 부처의 외부전문가 정책 회의나 민간의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는 법률지원단의 일부 다른 변호사님들처럼 프로보노 활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가 및 사회복지분야 연구자로, 졸업 이후에는 공익재단법원에서 공익전담변호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및 비영리분야에서 장기간 계속 활동하였지만, 당시에는 그 일이 제 본업이었기 때문에 프로보노 활동과는 다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프로보노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향의 연구나 사업에 참여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로보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전업이 아닌 봉사로, 즉 프로보노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자신의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쓰고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특히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일상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1명의 변호사라도 더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만큼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의 저변이 넓혀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과,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능력을 기반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법률가로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는 유형적으로 계산할 수 없음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주요 독자들은 로스쿨 학생들과 입시 준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분주하게 공부하며 당장의 과제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의 봉사활동을 권유하는 듯한 취지의 제 글이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본업 이외에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며 다른 여러 세상과도 소통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또 다른 의미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변호사가 된 이후 흔히들 겪게 될 현실적인 고민도 조금은 미리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밝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걸린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

황석영 작가의 ‘아우를 위하여’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다소 강력하게 표현된 이 문구가 가진 정도의 사회적 연대 책임감은 아니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이 후배님들에게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언젠가는 공익인권현장에서 함께 프로보노 활동을 하며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김수연 변호사

학부 시절부터 대학 졸업 후까지 공익단체의 활동가로 일하다가, 이후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여 기부·CSR·NPO분야 연구원이자 사회복지사로 지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공익전담변호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정상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는 서울대에서 2학기 이상 학점 4.0 이상을 유지한 학부생 46명 및 설문에 응답한 서울대 학부생 1,2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전략을 탐구하고 이들의 학습전략과 이러한 학습전략을 강제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른바 '서울대학교 최우등생'들은 수업을 듣기 전부터 수업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하고, 강의시간에는 교수의 말을 토씨하나 빼먹지 않고 필기하고, 시간을 적절히 안분하여 어느 과목에도 넘치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공부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비록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교수의 의견을 그대로 적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책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그 교육방식과 평가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방법을 고착시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수용적 사고만을 강요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변호사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변호사 시험은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수험생들은 선택형 시험을 위해 판례의 결론을 외우고,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보기 위해 판례의 요지를 암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비록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판례의 견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시험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교수들이 판례암기위주의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론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학 교수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은 판례의 요지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신문』의 「창간 68주년 특집」 변호사시험 문제점 점검에서 “많은 교수들이 판결요지 위주의 출제 방식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출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축적된 양질의 문제와 시간이 부족하고 판결요지를 그대로 문제화해야 정답 시비가 없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망 있는 실무가와 교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대가를 제공하

고 출제를 의뢰해 풍부한 문제 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꼭 판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신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법적인 사고력과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그 채점 기준 및 채점례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문제와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마저도 법학이론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품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학점을 잘 받습니다. 교수의 논문이나 기고문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출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교수의 견해를 요약하여 암기하고, 발표를 팔아 기출문제를 확보하고, 각 교수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술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점을 받는 데 있어서 법학 이론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교수가 자신의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모범답안을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곤란합니다. 다투더라도 학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평가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의견에 따라 채점기준 또는 결과가 바뀌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교수들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환경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안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수의 의견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과 암기해야 할 ‘정답’이 다를 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힘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結

변호사 시험을 판례위주의 출제에서 벗어나 이론적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의 변호사 시험제도에서 이론적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암기할 부담이 늘어날 뿐이고, 수험적으로는 자주 출제되고 배점이 높은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버림으로써 상대평가에서 앞서갈 수 있으므로, 변시 중요과목 이외 과목의 왜소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론의 비중을 늘리더라도, 학생들은 이름 또는 요지만을 나열하고 판례의 근거를 들어 판례의 결론에 따르는 방식의 답안 작성이 여전히 가장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학 이론교육의 충실화라는 변화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사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답보다는 법적인 사고력과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 및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례의 결론과 요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법적인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현재의 변호사 시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 및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 및 평가에서부터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들이 앞장서서 문제유형 및 평가기준을 개발, 공개하고 채점례를 상호검증하여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평가권은 교수권에 속하여 교수의 재량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만 판례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교수의 평가권이 보장되고 이로써 법학이론교육을 충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는 로스쿨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진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 설립 초기부터 매년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도 지역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원우들도 참여하여 지역민을 돕는 동시에 학교에서 학습한 법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년 째 이어져 온 법률상담이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이 정말 무료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실무가 출신 교수님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되고 어떠한 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도 평소 공부를 하며 접하던 판례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상속회복청구권으로 권리를 주장하려 하는데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와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지난여름 법원 실무수습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자료를 처음 접한 후 그동안 공부해 온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며 놀랐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학공부를 계속하며 후에 제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맡게 될 사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러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식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로스쿨마다 리걸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며 소외계층의 법률 상담이나 법률소송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리걸 클리닉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2013년부터 매 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없는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 마을 주민들에게 무



지난 10월 31일에도 지역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원우들도 참여하여 지역민을 돕는 동시에 학교에서 학습한 법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료 법률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도내 다수의 농어촌이 위치하고 있는데 적은 인구수 및 산업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무변촌'이라 불리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난 1월 도내 한 무변촌 지역을 찾아가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평일 낮 시간이었고 거리에 나가도 사람을 보기 힘들만큼 외진 곳이라 몇 명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곳이 비록 아주 작은 마을일지라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유권 다툼 등의 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인간은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큰 도시에만 법률사무소가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돌아보면 '무변촌과 같은 법률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무료법률상담만으로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무변촌에서의 '유료' 법률 활동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스쿨 뿐 아니라 지역변호사협회와 해당 지역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원광대 인근에서는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원룸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다 끝내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120명, 피해 금액은 약 66억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형사고소 절차나 고소장 작성 등과 같은 조언을 하며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스쿨이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귀족 집단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로스쿨은 비단 법조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무료 공익소송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교내에서 진행된 법률 상담에 참여한 한 교수님께서서는 “상담소 앞에서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법률상담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학은 그 양이 방대하며 높은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학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법적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변호사들이 각지에서 사람들을 도울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이보게 자네,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나

지난 11월 8일,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가 열렸다.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 학생들의 군형사 소송절차와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사법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현장을 찾았다.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현장



재판부 앞에서 변론을 하는 참가자의 모습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7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서면평가(예선)를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개 팀이 각각 군 검사와 변호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양측 주장과 군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서로 재판을 진행했다. 심사위원장으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섭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중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정재욱 변호사,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여기서 잠깐!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톺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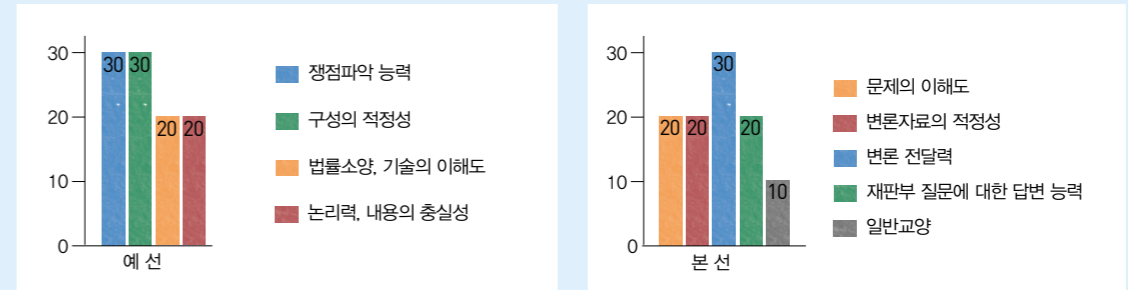
참가자격 및 팀의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2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팀 구성원 3인은 동일 로스쿨에 재학중이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경연 방식

서면평가(예선)	법정경연(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제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두 가지 서면을 모두 제출 1) 군검사 의견서 2) 변론요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대회 전 추첨을 통해 군검사 / 피고인측 팀을 정함 경연시간: 35분 경연방법: 주변론 → 재판부 질의·응답 → 최종변론 주변론은 팀당 최대 10분 이내로 한 사람이 3분 이상, 2명이 나누어 변론해야 함.

평가항목당 배점 비율



※ '서면 형식 등 절차 준수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감점제로 진행.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문제>

I. 피고인 관련사항

- 피 고 인 : 나태한(921213-1234567), 26세
- 죄 명 : 상관모욕, 무단이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적용법조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79조,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II. 공소사실

(무단이탈, 상관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조카인 병장 나약해를 만나 점심식사를 할 생각으로, 2019.5.2. 10:00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약 5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또한 소령 한 역을 자신의 복무태도에 대하여 질책을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개새끼, 지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상관

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으며, 도시치킨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하로548번길 73에 있는 소속대 독신자숙소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II. 사실관계 및 수사상황

부대원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행위들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1.1.부터 현재까지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활동보조, 유기견센터 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경연 결과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는 최우수팀에는 서울대 '버스정류장'팀이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제주대 '군벤저스'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전남대 '데프콘'팀이 수상하였으며, 각 군 참모총장상은 성균관대 'The Patriots'팀, 고려대 '백두산'팀, 부산대 '로고스'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수변론상은 '버스정류장'팀의 박상영 학생에게 돌아갔다.

Mini interview

서울대 '버스정류장'팀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팀장 오소영: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훌륭한 팀원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군사법이라는 낯선 법 분야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최측에도 감사드립니다.

팀원 박상영: 훌륭한 참가자 분들이 워낙 많았던 대회라 개인적으로 경연을 하는 와중에도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아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지만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시간을 쪼개서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원 소개 및 대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팀장 오소영: '버스정류장' 팀의 팀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소영입니다. 군대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군인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법을 공부하며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는 것도 이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대회가 아닐까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원 박상영: '버스정류장' 팀의 유일한 팀원을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영입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 법무관으로 입대할 예정이기도 하여 입대 이후 종종 접하게 될 군사법을 간접적이거나 미리 경험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마침 훌륭한 친구인 팀장 오소영 원우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해준 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명 '버스정류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오소영 · 박상영: 작년 이맘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졸업하기 전에 꼭 같이 변론대회를 나가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군사법변론경연대회 직전에 우연히도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이 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팀명을 처음으로 한 팀을 이루게 된 장소인 '버스정류장'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며 팀명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버스 정류장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듯, 저희를 같은 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준 장소라고도 생각하여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군검사 의견서와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면심사는 각각 어떤 논리와 쟁점을 담아서 준비했는지 소개해주세요.

오소영 · 박상영: 무단이탈행위에서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이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당한 대기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대해 다투었고, 상관모욕에서는 모욕성과 면전성이 문제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는 헌병의 음주측정의 성격 및 권한 유무와 그에 따른 증거능력과 증명력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군검사 의견서에서는 병력 손실의 방지, 군 조직의 위계 질서 유지,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군사법의 보호법익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전개하였고, 반대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에서는 군 인권의 보호, 국가 형벌권의 남용적 행사의 방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자의적 처벌의 근절 등의 대원칙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면심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오소영 · 박상영: 가능한 한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안과는 어떤 층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고 엄밀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여 서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버스정류장팀 팀장 오소영 학생

을 작성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요건에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포섭한다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두변론을 해야 하는 본선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나요?

오소영 · 박상영: 군사법변론경연대회의 본선은 주변론, 상대방에 대한 반론,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론을 제한된 시간 내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변론 시 시간 초과로 인한 감점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시간보다 다소 여유가 있게 주변론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큐시트나 대본을 쓰지 않고, 서면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논지의 핵심만을 짚어가며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연 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법관의 입장에서 저희 서면을 다시 읽어보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논리 전개 시 부족했던 지점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보완함으로써 재판부 질답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오소영 · 박상영: 아무래도 군사법은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저희로서는 생소한 영역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대 내의 일반적인 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보며 현



국방부장관상과 최우수변론상(MVP)을 수상한 버스정류장팀 박상영 학생

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소영 · 박상영: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시 한 번 훌륭한 친구를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익숙지 않은 분야임에도 공부해 나가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법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법에 관심이 있는 학우 분이라면 군사법변론경연대회는 꼭 한 번 경험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논리를 전개해나갈 때 군사법의 영역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말고 민법, 형법,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통섭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더욱 풍부한 변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영님은 MVP까지 수상하셔서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을 것 같아요. MVP 수상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MVP 수상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지도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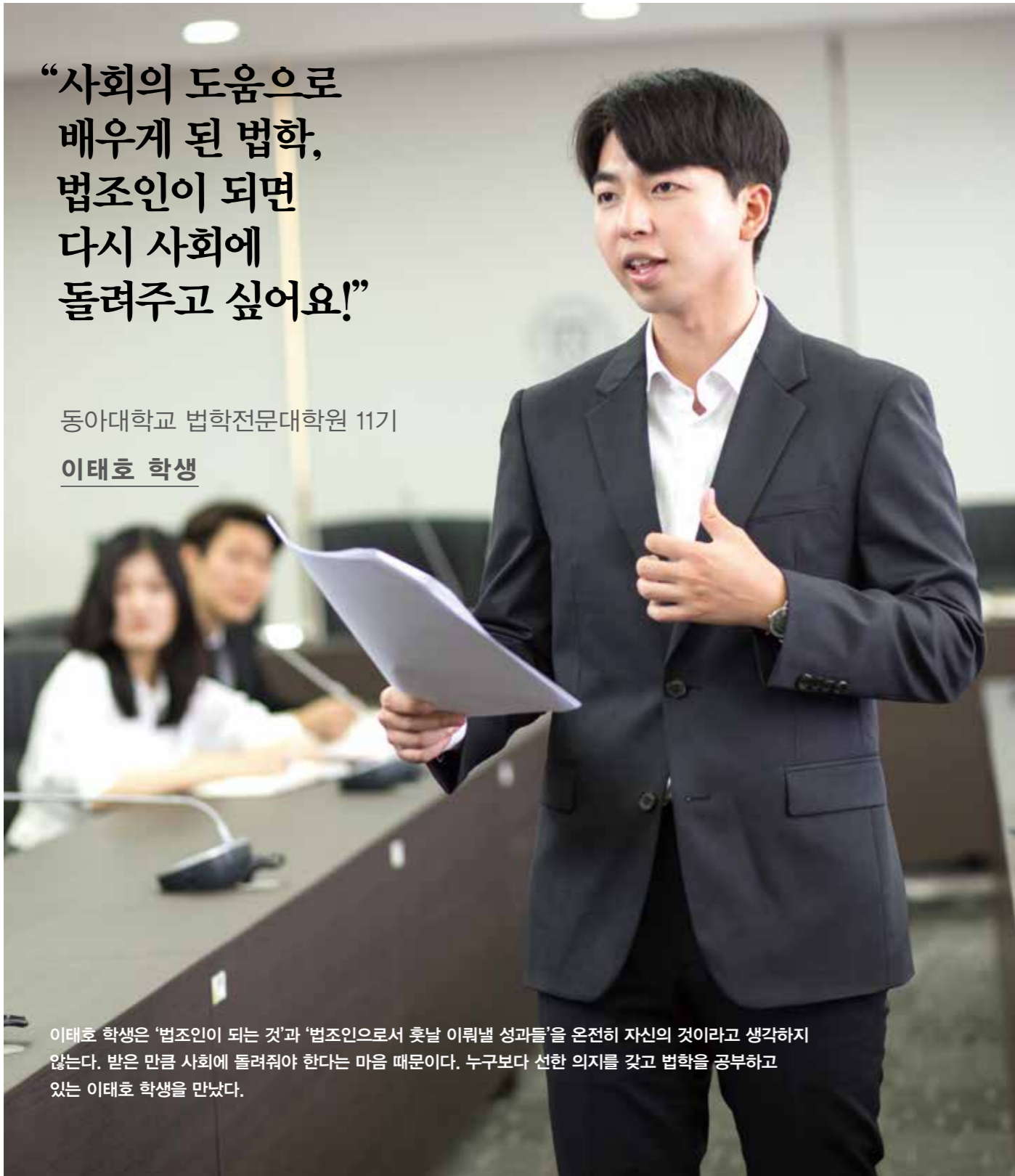
박상영: 똑똑한 팀장을 만난 덕에 과분한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변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짚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제 주장은 누구라도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렷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 번 모자란 팀원과 함께 하며 고생이 참 많았을 오소영 원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회의 도움으로 배우게 된 법학, 법조인이 되면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이태호 학생



이태호 학생은 ‘법조인이 되는 것’과 ‘법조인으로서 훗날 이뤄낼 성과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누구보다 선한 의지를 갖고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태호 학생을 만났다.

학부에서 전공한 ‘공공정책학’은 어떤 학문인가?

공공정책학은 공공부문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에서의 정책 작성과정을 해명하고, 정책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행정학, 법학 등의 전공과 비교했을 때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공정책학은 법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학문과 융복합된 종합 응용 사회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학부 시절 어렵지 않게 법학 과목을 수강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대학교를 다닌 4년간 장학금을 받았다고 들었다.

감사하게도 학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장학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형성된 발전 기금이어서, 지역사회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학 혜택을 받아 본 입장으로서 나처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다소 큰 뜻을 품게 됐다(웃음).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학창시절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고, 변호사를 꿈꾸며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 무렵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학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는 소문을 듣고 꿈을 접었다.

다시 한 번 로스쿨에 진학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건 군 제대 후 얼마 동안 백화점 판매원 일을 하던 때였다. 당시 캐주얼 남성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만한 옷을 찾고 있다고 문의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지만, 결국 그 고객이 원하는 옷은 다른 매장에 있다고 생각해 해당 옷이 있는 매장으로 안내해 주었다.

얼마 후 그 고객은 내 덕분에 원하는 옷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종종 내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되었다. 원래부터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좋아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언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

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법조인 또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조인을 꿈꾸게 됐다.

학비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

단순히 학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접었었는데, 먼저 로스쿨에 입학한 학부 동기로부터 ‘장학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듣고 보니 로스쿨이 각종 루머,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로스쿨에는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나 또한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태호 학생에게 법학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지금까지 주변과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로스쿨도 국가의 장학제도가 없었다면 선뜻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법학’을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법학을 배울 수 있었다면, 배운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그 도움을 주는 수단이 법학이었으면 한다.

로스쿨의 설립으로 유능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다. 이는 아직까지도 법과 국민들 사이에는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법률서비스를 보충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법학은 일종의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로스쿨 입학 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로스쿨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내 또래의 동기들과 벚꽃 구경을 간 적이 있다. 당시 공부에 대한 압박 관념이 있었던 터라 공부할 시간에 벚꽃놀이를 가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길가에 늘어진 벚꽃나무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훗날리는 벚꽃 잎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다. 아마 그날 함께 했던 동기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 때의 동기들과 지금은 공부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바쁜 로스쿨 생활에서 자주 놀러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마음 맞는 동기들과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가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곤 한다.

법학 공부가 잘 되는 나만의 장소가 있다면?

동아대학교 법전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같은 열에 앉은 학우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다(웃음). 가끔 학습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기분전환을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열람실만큼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없는 것 같다.

법 공부 이외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려 달라.

사실 비법학도인 나로서는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빠듯해서 공부 이외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로스쿨 생활이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3년 간의 장기 레이스라는 생각이 들어, 학교 지하에 마련된 헬스장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코어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주로 한다(웃음).

2020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 비법학사 출신이기도 하고,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좋은 성적을 낸 후에는 나처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졸업 후에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을 제대로 활용하는 현명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 나를 신뢰하는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

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법조인이 된 후에는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로스쿨에서의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를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재판연구원에 도전해보고 싶다. 재판연구원을 하면서 법 지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학부 시절에 품은 뜻도 실현해야 하지 않나?(웃음)

맞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법조인이 되는 것도, 법조인이 되어 이뤄낼 것들도 나 혼자만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면 계속해서 사회에 갇아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기여하고 싶다.

Lawschool TIP

이태호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비문 없는 문장으로 계속해서 다듬을 것!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성되었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비문법적 표현, 즉 비문을 줄이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작성한 글을 소리 내어 읽다보면 말하면서도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수정해간다면 훨씬 매끄럽게 읽히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면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포섭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치되는 주장을 일부 긍정해 준 다음 나의 주장을 펼친다면, 논제의 찬반 주장을 모두 언급한 만큼 득점 포인트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1년이 제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어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건영 학생

작년 말 언론사들은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 학생의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로스쿨 재학 중에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도 했고, 이 학생이 응시한 7월 시험에서 외국인 응시생 합격률이 43%에 불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중앙대학교 로스쿨로 향했다.

중앙대 로스쿨 재학 중에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소감은?

객관식 한 과목을 잘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합격까지 해서 얼떨떨하다.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서 실감이 나지 않을 때마다 합격 통지서를 다시 읽어본다(웃음).

미국은 변호사시험 외에 입회에 필요한 절차(법조윤리 시험(MPRE), 뉴욕주법시험(NYLE), Pro bono 50시간 등)가 있어서 미국에 간 김에 이 절차까지 다 마치고 왔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떨어졌으면, 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어서 이번엔 합격한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부시절에도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로스쿨로의 진학이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겠다.

‘반드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분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어서 학점 관리라든가 어학점수 관리를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꼭 판사나 검사가 아니더라도 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법학’에 매력을 느꼈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물론 로스쿨에 입학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썼다(웃음).

2018년 2학기부터 1년간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변호사시험 공부만 하기에 빠듯한 시간에 복수학위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선뜻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있나?

로스쿨에 들어와서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고, 학부도 쉬는 기간 없이 7학기 만에 조기졸업을 하고 바로 로스쿨에 진학한 터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주변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가거나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다(웃음). 그러다가 중앙대 로스쿨과 인디애나 주립대 로스쿨간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휴학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인디애나 로스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불법행위법(Torts)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시켰다. 동양인이 거의 없는 강의실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살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은 처음이다. 이후로 교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를 지목해서 수업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이곳에서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질문하는 것을 ‘cold-calling’이라고 하는데, 아마 떨지 말고 잘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한번은 그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나를 부르더니, 오늘도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내 영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발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 이름 ‘건영’은 영어로 ‘Gun Young’이라고 쓰는데,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젊은 총’ 정도로 해석되고 읽혀서 희한했던 모양이다. 이 외에도 공부하는 틈틈이 여

행을 다니면서 생긴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역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다 공부랑 관련이 없다(웃음).

인디애나 로스쿨에서 LL.M(Master of Laws,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LL.M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과목’과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을 잘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는 것이 관건이다. 인디애나 로스쿨의 경우 학생이 전문분야(Specialization)를 정하고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 학위에 그 사항이 표기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하여 거기까지 하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겪어보니 미국 로스쿨과 한국 로스쿨은 어떻게 다른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시험 공부할 때 사례집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을 많이 활용하는데,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수업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Out-lining’을 활용해서 공부한다. 도서관도 밤 10시면 문을 닫고 아예 열지 않는 날도 있어, 한국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또 변호사시험 준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서는 수업시간에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를 풀거나(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는 아예 유출조차 안 된다.) 준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수님께서도 변호사시험은 시험 한두 달 전에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다.

변호사시험 공부량으로 보면 한국이 공부해야 할 양이 훨씬 많고 방대하다. 다만 한국의 변호사시험과 ‘비교해서’ 쉽다는 것이지 유학이 처음이었던 내게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보낸 1년 동안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

미국에서의 1년은 나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다. 한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만 주변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다른 학우들과 비교하게 된다. 미국에 다녀

온 후로는 ‘한국 로스쿨에서의 시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약 30년에서 40년간 법조인 생활을 한다고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니 당장 받는 학점에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되었다. 또 그만큼 스스로에게 정당하고 자신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LL.M 과정은 보통 실무에서 5년~7년 정도 업무를 하시는 법조인분들이 이수하는 과정이라 실제 미국 로스쿨에서도 한국 로스쿨 재학 중에 오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미리 이 과정을 겪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면 전문성을 설정하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공부를 하다 보니 법조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는 ‘법률 영어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용어의 세부적 차이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법률 용어를 영어로 구사하는 방법을 익히고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능력과 자격증을 활용해서 국제계약, 국제거래, 중재 또는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려면 한국 변호사시험에 붙어야겠지만 말이다(웃음).

끝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학부 때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만 있으면 ‘나같은 사람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작아지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나조차도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은 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다(웃음).

변호사가 된 후에도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또 치열하고 고된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매순간 기억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이것만은 알고 응시하세요!

애써 미국까지 갔는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요??

비법학사 로스쿨생이 재학 중에 미국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시험을 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다. 아직 로스쿨을 졸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로스쿨에서 몇 개의 법학 과목을 들은 것으로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애써 미국까지 갔는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州)별로 상이한 응시 요건을 잘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1년에 두 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LL.M 학위를 받고, 그 학위를 이용해서 변호사시험을 치는 방법도 있다.

미국 변호사시험, 어떻게 구성되나요?

뉴욕주의 경우 2016년에 UBE(Uniform Bar Exam) 시험을 도입했는데, UBE는 객관식(MBE), 기록형(MPT), 사례형(MEE)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과목이다.(그 중 7과목은 객관식인 MBE에도 출제된다.) UBE를 채택한 주별로 MBE 커트라인 점수와 총점 커트라인 점수가 다른데, 뉴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점 400점 중 266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MBE에서는 13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MBE 7과목은 구분 없이 총 200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과락’의 개념은 없지만 133점 이상을 획득하려면 한 과목당 적어도 반 이상씩은 맞춰야 한다. 특히 15~20문제 가량은 다음 회차 시험을 위한 테스트 문항(일명 ‘가짜문항’)이 섞여있고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 이상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와 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학지식을 요하는 우리나라의 기록형 시험과 다르게, 미국 UBE 기록형 시험은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의견서를 써야 하는데, 법률문장을 수려하게 써야 하니 외국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카더라’를 믿지 말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계획이라면 BOLE(The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에서 시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UBE가 도입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과목이나 요건 등도 계속해서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로스쿨 학년별 공부 계획과 전략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교수지식채널'을 운영하는 정연덕입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교무 부원장, 학생 부원장을 7년 정도 하면서 입학, 생활, 졸업, 변호사 시험 등 학생지도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로스쿨 입학 후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입학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로스쿨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3학년의 경우

3학년의 경우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 응시해서 객관적인 자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월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이상인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 8월, 10월 모의고사도 있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위권 학생이 위로 올라가는 쉽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가 점점 8모, 10모 성적이 올라가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로스쿨 시험은 성적이 내려가기는 쉬워도 올라가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변호사 시험을 내시는 로스쿨 교수님,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출제하므로 변호사 시험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문제 유형의 변화도 미리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재판연구원 시험이나 검찰 임용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판연구원, 검찰 시험은 주로 민사, 형사 판례와 기록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변호사 시험공부도 틈틈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임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공부가 부족하면 3학년 2학기에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휴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자기 실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8모, 10모, 변호사 시험을 보고 졸

업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부가 더 어려워 집니다.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변호사 시험을 재수, 3수 해서 5번까지 보게 되면 시간관리나 공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탈자 문제가 있어 생각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3번, 4번 보아서 합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째에 붙는 사람은 제가 1~2명 정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할수록 나이, 체력, 자신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졸업을 1년 늦게 하더라도 졸업 후 번시 탈락보다는 오히려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2. 2학년의 경우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2학년이 되면 1학년 필수 과목보다는 선택과목 수업이 있어 상대적으로 로스쿨 공부에 부담이 적어 집니다. 학점관리도 쉽게 됩니다. 필수과목은 강제로 학점이 배분되지만,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학교생활과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시간에 주요 법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민법을 어려워하는 학생과 공법계열을 어려워하는 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은 민법 공부를 어려워하고 소수는 민법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공법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민법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바랍니다. 2학년 여름 방학에 인턴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헛바람 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때도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번시 모의고사는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배운 것은 없어도 3학년 8월 모의고사를 미리 응시해보면 얼마나 내 실력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형도 쓰기 어렵고, 기록형도 어려운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일정과 같이 처음부터 종료시각까지 응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3학년이 되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체력안배, 공부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에는 선택형은 모두 정리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합니다. 5년 치 모의고사와 번시 기출문제는 20회분이 넘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까지 정리해야 3학년에 올라가서 기록형이나 사례형에 투자할 시간이 있습니다. 2학년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3. 1학년 공부 방법

이제 입학을 앞둔 로스쿨 신입생들은 3월에는 대다수가 부푼 꿈과 희망을 품고 입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꺾이고 좌절하는 것이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진도는 많이 나가고 답안지는 쓸 내용이 없고 아는 것은 없는데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법학공부는 반짝이는 머리를 가진 사람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성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내용도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달이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과 더불어 운동 습관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것처럼 1주일 정도 밤새고 반짝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3년간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마라톤을 100M 달리기처럼 계속 뛰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체력이 안되면 3학년까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법학공부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서로 연관이 있고 리걸 마인드가 생깁니다. 다만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참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로스쿨 수업 외에도 최소한 5시간은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스스로 쓰거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를 병행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변호사가 되어야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법 계열 공부는 실제 사건에서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법의 기본원리는 다른 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니 지금 기초를 잘 만들어야 이후 공부나 변호사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로스쿨 입학도 어렵지만, 생활을 버티면서 변호사 시험을 붙기도 어렵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초심을 이어 나가면서 꾸준히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소망한 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 호 교수

1. 악의(惡意)를 처벌하자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통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법 집행 관행과 법 감정을 비판한 바 있다. 다산은 살육의 판결이야말로 천하의 저울처럼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일 길만을 찾거나 반대로 살릴 방법만 찾는다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살길을 찾아보고 죽을 방도를 모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흠흠(欵恤)의 본의라고 주장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 자세가 사법정의의 기초라는 것이다.

물론 다산은 조선 후기에 관용을 남용하다가 법을 굽히는 사태를 매우 걱정했다. 이를 악용하여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산이 보기에 조선 후기의 많은 목민관들은 원칙과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산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감정과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감정과 편견은 무조건 관용하는 감형의 남발만큼이나 쾌씸하다며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엄형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다산은 용서를 일삼는 아녀자의 마음도 반대로 엄형을 추구하는 군인의 태도 역시 모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해야 마땅하다. 조선시대에 범행동기와 고의성의 유무는 처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다산 역시 고의 없는 범죄는 용서해야 한다고 보아 특별히 범의(犯意) 유무를 강조했다. 무언가(동물물 포함하여)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동물을 죽이려다가 옆에 있던 사람을 실수로 해친 경우, 애초에 사람을 죽이려던 마음이 없으므로 과실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다산은 무언가를 죽이려했다는 살의(殺意)의 유

무가 중요하다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판결의 기초라는 것이다.

2. 정확한 조사는 필수적

범의를 확정하기 위해 범인의 자백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자백을 받으려면 과학적인 수사와 엄밀한 추론 그리고 이에 근거한 공정한 심문 절차가 뒤따라야 했다. 다산은 오직 정확한 사건 조사와 합리적인 심리만이 정의로운 판결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조선 후기 대부분의 목민관들은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채 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범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성급하게 사건을 결론짓기 일췌였다. 수사를 정확하게 하려는 목민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18세기 후반 황해도 강령에서 백성 김윤서가 장막봉을 구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막봉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자 김윤서가 발로 장막봉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시 손에 든 댕뱃대로 관자놀이를 때린 것이다. 이후 장막봉이 앓다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세 차례의 조사가 벌어졌는데, 1차 조사관[초검] 강령 사또는 장막봉과 김윤서는 친척 사이라 특별히 죽일 마음(고의)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구타 후 장막봉이 관아에 드나드는 등 정상적인 생활로 한 것으로 보아 구타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후일 초검안을 살펴본 다산은 강령 사또의 허술한 조사를 질타했다. 이마 부위의 관자놀이는 필사처(급소)로 살갓이 터질 정도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

막봉이 구타당한 후 관아에 드나든 사실은 있지만 법조문의 기한이 10일(구타 후 10일 안에 사망하면 구타를 죽음의 원인으로 인정함)이므로 구타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였다. 강령 사또는 명백한 살인 사건을 병사로 잘못 조사했는데, 당시 오류는 복검 및 삼검으로 이어졌다.

다산은 정확한 조사와 편견 없는 심리를 강조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을 병사나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법관의 자세라고 할 수 없었다.

3. 하늘에 죄를 짓지 말라

다산 정약용이 흠흠신서를 저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산은 조선의 관리들이 경전을 외우고 시문을 읊조리는 데 골몰할 뿐 법률 조문에는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목민관의 임무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만큼 무거운 사명이 또 있을까? 말 그대로 살육 조사와 심리는 하늘의 권한을 대신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에 무심하다면 그런 죄악이 어디 있겠는가?

다산은 흠흠신서에서 살육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목민관(형조 관리들을 포함하여)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정조는 검시를 잘못하거나 살육을 영성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보고서를 올린 지방관들을 엄하게 추핵했다. 정조 치세에 지방관들은 어명(御命)이 무서워서라도 법전을 들추어가며 공부했다. 정조 사후 세태가 돌변했다. 세상에 억울한 옥사가 넘쳐났다.

다산은 퇴락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각종 옥안(獄案)을 수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살육을 처리할 목민관들의 참고서를 만들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흠(欵)자’를 두 번 연속하여 적었다. ‘흠흠신서(欵欵新書)’는 이렇게 명명되었다. 서문에서 다산은 법관이야말로 하늘의 권한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재천이라 한다. 그런데 지방관은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 주고 죄진 사람은 잡아다 죽일 수 있으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 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인(婦人)들을 호리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비참하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구휼할 줄 모르니 이는 매우 큰 죄악이다”(흠흠신서 서문)

참고문헌: 김호,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2013.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공부 방법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1. 사법시험 악몽에서 벗어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도입이 사법시험 당시의 장기수험생(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서도 낭인방지를 위하여 응시기회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시험 세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낭인방지를 위하여 응시제한제도가 합헌이라고 한다. 사법시험은 아무리 오랜 수험생활 끝이라도 합격하기만 하면, 곧바로 판사·검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불과하다. 인생을 걸고서 장기간 시험 준비만 하고 있을 매력 없다. 몇 번 변시에 응시한 다음 합격가능성이 없으면 진로를 바꾸고 있다. 변시 커트라인에서 훨씬 못 미쳐 도저히 합격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응시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법시험 시절의 부작용 때문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변시의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행정규제의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

2. 법전원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변시는 법전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5년 이내에만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1회 응시도 없었더라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법전원 졸업자는 중한 질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받을 수 없다. 치료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법전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는 변시 준비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 그만큼 시험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졸

업 후 갑자기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준비를 할 수 없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가. 변호사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는 개업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소득창출하며 살아가는 직업으로 정년도 없다. 자영업자와 비슷한 변호사의 자격취득시기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시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에 해당된다.

나.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고 있다.

법전원 졸업한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5년 동안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는 연령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누구나 공무원 정년 이전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인생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여 변호사 경력을 쌓은 경력법관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자격사에 불과하여 연령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다. 변호사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 결격사유"와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결격기간이 지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결격사유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과 응시기간 제한기간이 겹쳐 5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기본권 보장기관

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3. 학력제한을 하는 의사, 약사에게도 없는 응시기회제한으로 변시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엄격한 학력제한을 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응시기회제한이 없다.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만 이런 제한을 두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변시 준비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4. 변시 응시자들만을 유일하게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변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앞날을 국가가 좌우하겠다는 것은 무서운 국가주의의 발로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그 시험 준비생들이 몇 년간 시험준비를 하는지, 몇 회를 응시하는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시 응시자들에 대해서만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변시 응시자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극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전원을 졸업한 청년들을 과도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5. 응시횟수 5회 제한도 응시자의 주체성·자율성을 부정하는 기성세대의 야만적 폭력과 다름없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4회 응시 후 4년간 응시제한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법무부 역시 위헌문제가 있다고 하여 스스로 이 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응시횟수제한은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는 미국 로스쿨의 제도이다. 우리는 응시자의 50% 가량만 합격하는 선발시험이라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5회 응시횟수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 현행 변시는 기존의 사법시험 1,000명 합격자를 500명 정도 늘린 경쟁시험에 불과하다.

법전원 졸업자는 변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자기인생은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 변시 수험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변시 준비생은 가장 평화롭게 독서실에서 공부만 할 뿐이라 사회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2명 중에 1명 만 합격한 변시에서 빨리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시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기성세대의 야만적 폭력이다. 어느 누구도 변시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험생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어 비난하면서 변시 응시를 중단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강요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

6. 변시 응시기간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인 병역의무 이행기간 허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변시 응시기간제한의 유일한 예외로 병역의무 이행기간만 인정된다. 남성에게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듯, 여성의 임신, 출산사유도 예외사유로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에서 인정되었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도 예외사유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응시기간제한은 몇 가지 예외사유의 확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7. 응시기간 5년이 지난 후 다시 법전원에 입학하여 졸업하면 변시 응시기간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증가할 것이어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응시기간제한 조항은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간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설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조항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응시 결격사유”(변호사시험법 제6조) 중에

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 기회를 상실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더라도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8. 예비시험의 도입은 변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자의 구제책이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은 합격과 동시에 변호사의 자격을 갖는다. 법전원을 졸업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일본처럼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대학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전원 도입과 동시에 법과대학은 폐지하였다. 그리고 예비시험 합격자가 변호사시험 합격한 후에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실무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본은 예비시험 합격자와 법과대학원 졸업자는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이런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응시기간제한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자의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9. 결론적으로 응시기간제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변시의 합격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목적 등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비인간적인 제도라서 폐지되어야 한다. 법전원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좌절시키면서 한국의 법전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자기 법전원의 변시합격률 제고를 위해서, 변시의 경쟁률 저하를 위해서, 변호사의 대량배출을 막고자 응시기간제한 제도를 폐지하지는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10.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대하여 위헌결정(또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18년에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제한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현재도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만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제한 조항의 전부 위헌결정이 어렵다면,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기간제한’ 조항이라도 한정위헌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부디 변시 응시자들을 법전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을 유지하는 정책적 수단과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2019. 11. 29.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제도 필요인가”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10월)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10월에 시행된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이 담겼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19년도 제2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①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②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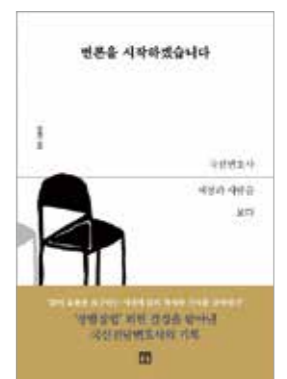


이 책은 LEET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로서, LEET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에서 기획하여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제10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0~2016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5~2010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19.11.25
가 격	8,000원('20학년도), 22,000원(합본)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지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만났다. 형사 법정에서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하나 잘못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저 자	정혜진
출 판 사	미래의 창
발 행 일	2019.12.06.
가 격	14,000원

면역력 높이는 10가지 방법

이번 겨울 추위가 유난히 빨리 왔다. 주변에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보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기에서 시작해 폐렴에 걸려 고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폐렴이 패혈증으로 번져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정답은 면역에 있다. 면역이란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몸 안에 들어온 병원균을 무력화시키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체계이다.

면역력이 강하면 병원균에 노출되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면역력이 낮으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눈병이나 구내염, 입술 물집, 잦은 배탈, 설사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면역력 높이기 10가지 생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양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1. 잠은 7시간 이상

평소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장시간 잠을 못 자게 한 실험용 쥐는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질의 잠을 성인은 7시간 이상, 소아는 12시간 이상 자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좋다. 특히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다.

잠을 자야 분비된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수면 리듬도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수면패턴을 유지하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취침 2시간 전에 더운 목욕을 하거나 바나나, 체리, 우유 등과 같이 체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식품을 먹도록 하자.

2. 오후 4시 이후 카페인 피하자

오후 근무 중 졸음이 오더라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커피, 녹차 등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는 오후 4시 이후에는 피하자. 밤에 잠들게 어렵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졸음이 심하면 5분 정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졸음이 달아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5분 동안의 산책은 커피 한 잔을 마신 것과 동일한 각성효과를 나타낸다. 회사에서 심하게 졸릴 때에는 10분 내외로 토막잠을 자는 것이 좋다.

3. 손을 잘 씻기

손에만 2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 손만 잘 씻어도 세균감염의 60%정도는 예방된다. 자주 손 씻는 습관은 바이러스와 곰팡이, 세균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만약 세면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항균효과가 있는 젤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괜찮다. 또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도 세균이 많기 때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1회용 알콜솜으로 자주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운동을 안 하면 온몸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 우리 몸 이곳저곳이 자주 아프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피로를 느끼며 몸 전체가 피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벼운 운동은 깊은 호흡과 긴장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의 하나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면역계를 자극한다.

식사 뒤 10분 정도 걷기 정도면 된다. 다만 갑작스레 너무 심한 운

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감염성 질환에 이미 걸린 후에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5. 면역력에 도움 주는 음식 먹기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C, 비타민A, 비타민B군, 비타민E, 단백질 등이 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비타민C가 많은 풋고추, 피망, 파프리카, 양배추, 유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칸이 많은 버섯, 비타민B군이 많은 수수, 보리, 울무, 기장, 메밀 등의 잡곡이 있다. 특히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A는 붉은 고추, 당근, 말린 살구 등에 많이 있다. 호박씨에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 감기를 앓는 기간을 줄여준다.

각종 녹황색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역시 면역시스템의 노화속도를 늦춘다. 감기 초기에는 비타민C 500mg을 하루 네 번 먹으면 감기 기간을 줄여준다.

6. 담배를 줄인다

담배를 피우면 8년 정도 더 늙는다. 또 암이나 폐기종, 기관지염과 같은 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곳에 1시간 같이 있으면 간접흡연으로 자신이 4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즉 한 개비당 3분의 1 정도는 옆 사람이 마시게 된다.

금연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쉼련형 전자담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쉼련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인정하고 있다.

7.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사고위험과 감염, 동맥경화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받는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보자. 산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깊은 숨을 열 번 정도 쉬어보는 것도 좋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중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자. 세상을 살면서 시시각각 부딪히게 되는 문

제들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스트레스의 해악을 줄일 수 있다. 불평이나 불만, 시기, 미움, 질투 등의 감정은 내 몸 면역세포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흉들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 몸 건강에 적신호'임을 떠올리고 최대한 빨리 내 마음에서 몰아내자. 평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내 몸의 면역력은 잔잔한 평정심이 유지될 때를 가장 좋아한다. 명상이 추천되는 이유다.

8. 술을 줄인다

알코올은 폐렴, 결핵,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외상을 당한 후에 감염 위험을 더 올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만 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작용이 생겨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여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9. 사람들을 만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사람은 면역기능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한 기분은 면역세포 중 T세포의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종교 활동이든 직업 때문이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과 면역에 도움이 된다.

10. 햇빛 쬐기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늘고 있지만 밖에서 햇빛을 쬐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 비활성비타민D가 활성비타민D로 바뀌는데, 이 물질은 몸속의 병원균과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암의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3%가 비타민D 부족상태이고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부족상태가 더 심각하다. 이는 공부에 위해 계속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내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경우엔 비타민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행히 비타민D는 반감기가 길어서 매일 햇빛 쬐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야외활동을 해서 1,2시간 햇빛을 쬐도록 하자. 최근엔 피부암이나 햇빛에 그을릴 염려 없는 인공 자외선을 조명처럼 이용하는 기구도 나왔다.



배연관 변호사
YK법률사무소

조커를 위한 변론요지서 — 조커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달의 영화



⊕
조커 (Joker)
스릴러, 드라마 / 2019.10.02, 개봉 / 123분 / 미국 / 15세 관람가

“외톨이 정신병자와 그를 냉대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사회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영화 ‘조커’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스스로를 ‘조커’라고 소개한 다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저렇게 외칩니다. 주인공 아서는 그 직후 자신을 조롱하였던 ‘머레이’라는 MC를 권총으로 쏘 죽인 후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성을 던져 버린 다음 ‘조커’라는 진정한 괴물로 흑화하며 영화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서 플렉이 이렇게 조커로 흑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를 향해 터뜨린 분노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나마 공감을 하시거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조커에 공감한 시민들이 조커처럼 분장하고 고담 시내에서 “우리가 광대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실제로도 홍콩이나 칠레, 레바논 등지에서는 “우리가 조커다”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감독이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닐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독자 여러분께서 피고인 아서 플렉을 변론하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편한 공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변론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변론하기 참으로 힘들

더라도 그 변론으로 판사나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을까요? 만약 조커를 위한 ‘악마의 변호인’이 된다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조커의 곁에서 자고 시민들을 향해 웅변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조커에 공감하는 이유를 법리에서 찾을 수 있을까.

조커의 첫 번째 살인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납니다. 조커는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웨인 사의 직원들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야간에 자신을 짓밟는 세 명의 성인 남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지하철에서 구타를 당하던 조커가 느꼈을 공포심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바, 관객들 눈 앞에서 최초 두 명을 쏘아 죽일 때 많은 관객들은 ‘나라도 저랬겠다’라고 동정할 수 있을 것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과잉방위나 피해자가 강하게 살인을 유발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들고 있고, 법률가라면 쉽사리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인 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조커는 발목

에 총을 맞아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세 번째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탄창이 빌 때까지 난사하여 도저히 ‘방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인을 하며, 어머니에 대한 살인이나,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살인, TV 쇼 호스트에 대한 살인은 피해자가 살인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병자로서 심신이 미약하다고 변명하기에 조커는 지나칠 정도로 계획적이고 지적이며, 살인의 동기가 매우 악의적이라는 점에서는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정신병을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의 감면을 탄원하려면 2008년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데려오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조커를 동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서 플렉의 인성이 붕괴하여 조커로 타락하는 과정, 그리고 조커의 살인의 동기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조커를 변론하고, 판사와 배심원단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정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영화는 이 점에 대한 이유를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궁핍한 사회/경제적인 현 상황, 이유 없이 두들겨 맞은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였다가 해고된 이후 동료 중 아무도 자신을 두둔하지 않는데 대해 느낀 배신감, 자신을 향해 텔레비전에서 쏟아졌던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 출생과 자신의 발작의 이유에 대해 알게 된 진실, 악화되어버린 정신병,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신을 속이고 모욕하고 배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까지 파괴해 버려야겠다는 충동에 휩싸이는 것 역시 한 명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관객들은 조커를 사이코패스처럼 무섭다거나 끔찍하게 여기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평을 남기고 있고, 평론가나 기자들은 “거친 히어로에 대한 우리의 열

광(정덕현-엔터테인먼트)”, “잔한 악당에 빠진다(이슬기-서울신문)”, “우리 안의 조커를 발견하는 영화(김유태-매일경제)”라는 찬사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 정도라면, 조커는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판장 역시 판결문을 낭독하며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는 동정할 수밖에 없고...”라는 운을 달며 양형에 참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커와 함께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영화의 말미에 고담시는 조커로 완전히 흑화한 아서의 웃음과 함께 불타오르고, 마스크를 뒤집어 쓴 군중은 조커를 숭배하기 시작하며, 재벌로 대표되는 웨인 부부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라는 저주를 받고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나, 감독은 아서가 조커로 흑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조커 뒤에 서게 된 군중이 ‘차별받고 외면받은 듯한’ 모습을 짙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개개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분노하여 거리에 나서게 되었는지, 반발의 아이콘을 조커로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감독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서와 같이 보살핌 받지 못하는 사회 속 외톨이의 범죄가 트리거가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다 느낀 사람들이 외톨이에게 공감하고 범죄자를 우상화 한 다음, 그를 앞세워 거대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모든 것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 말이지요.

칼럼니스트들이 조커를 히어로에 비유하고, 고담 시민들이 조커와 함께 가면 쓴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내심에 조커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대학

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제너럴 조라고 불리며 영웅시되고 있고, 한강 살인사건의 기사 댓글란에는, 살인자를 응원하는 “장00 시원하다”, “깡판치고 00하며 죽은 놈이 양아치 조선족이라는건 왜 안 밝히냐”, “장00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다” 등등의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저는 몹시 겁이 납니다.

허영 교수는 헌법에 관하여 “헌법철학에 비취 보면 사회 통합이 통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커를 영웅시하고, 살인자를 응원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사회는 결코 통합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극장을 나서며, 저는 우리 법조인들이 지난 몇 년간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의 균열점을 찾아, 이를 메워야 할 때는 아닐지,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광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외톨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명작의 귀환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평균 시청률 44.3%를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회자되고 있는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 초연되었지만, 초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탄탄한 서사와 효과적인 연출로 대작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브라운관에서 무대 위로 올라온 <여명의 눈동자>는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인 1943년 겨울부터 한국 전쟁 직후 겨울까지 동아시아 격변기 1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아픈 역사를 담았다. 중국 남경 부대의 정신대로 끌려가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윤여옥'역에는 김지현, 최우리, 박정아가 캐스팅됐으며, 일본군으로 징용되어 여옥과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최대치'역에는 테이, 온주완, 오창석이 열연을 펼친다.



- 🕒 **공연기간** 2020.01.23. ~ 2020.02.27.
- 📍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티켓가격** VIP석_140,000원, R석_120,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마침내 마주한 진실
연극 <엘리펀트 송>

연극 <엘리펀트 송>은 돌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의사 로렌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장 그린버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환자 마이클을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캐릭터를 노련하게 그려내는 배우 이석준, 고영빈이 병원장 그린버그 역을, 정일우, 강승호가 목격자인 마이클 역을 맡았다. <엘리펀트 송>은 2004년 캐나다에서 초연한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공연되었는데, 극의 촘촘한 서사와 높은 몰입도로 인해 프랑스의 토니상으로 불리는 '몰리에르어워드 작품상'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천재 감독 자비에르 돌란이 동영 영화까지 제작한 바 있으니, 작품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 🕒 **공연기간** 2019.11.22 ~ 2020.02.02
- 📍 **공연장소** 예스24스테이지 3관
- 🎫 **티켓가격** 전석_55,000원
- 🌐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새로운 힘의 시대, 새로운 여성들
전시 <강남모던-걸>

1919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신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전시가 오픈했다. 화장방, 욕실, 침실, 의상실, 영상실로 구성된 전시장에는 신여성들이 사용했던 소품과 의상, 조명 등이 마련되어, 당시의 여성들의 삶과 욕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전시장을 뚫고 채우는 각종 아이템은 당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사상과 열정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전시 공간의 디자인은 공간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E&A 308아트크루가 맡았으며, 전시장 곳곳을 채우는 모던한 일러스트는 몽상, 수수, 온진 등 일러스트계에서 핫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다.



- 🕒 **전시기간** 2019.12.20 ~ 2020.01.31.
- 📍 **전시장소** M컨템포러리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www.m-contemporary.com

쇼팽과 지브리의 완벽한 케미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II>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서정적 작곡가 쇼팽의 음악과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음악이 만났다. 섞이지 않고 이질적일 것만 같은 다른 시대, 다른 장르의 음악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솔리스트들의 연주로 인해 마치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진다. 송영민 피아니스트를 필두로 하여 이현웅 바이올리니스트, 이신규 비올리스트, 송민제 첼리스트 등이 의기투합하여 무대를 만들었다. 쇼팽의 곡과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수준 높은 음악가들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번 앙상블은 예년과 달리 한번의 공연만을 앞두고 있어 다른 시대, 다른 장르의 음악이 어떠한 케미를 보여줄지 궁금한 관객은 공연 일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 **공연기간** 2020.02.23
- 📍 **공연장소** 롯데콘서트홀
- 🎫 **티켓가격** R석_50,000원, S석_40,000원
- 🌐 **홈페이지** www.stompmusic.com

2020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장단 회의 개최



11월 14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원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모의시험 출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총괄위원장을 맡은 김순석 이사장을 비롯해 영역별 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했다. 강원대 최희수 원장(공법), 경희대 권재열 원장(민사법), 한양대 김재봉 원장(형사법), 충북대 이동원 원장(선택 과목)이 영역별 위원장을 맡았으며, 오는 2월 출제를 위한 합숙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무연수원 간담회 개최



11월 14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문원협의회와 법무연수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전문원협의회 측에서는 김순석 이사장, 임원 9인과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무연수원 측에서는 박균택 원장 외 6인의 교수가 참석했다. 법무연수원과 법전문원협의회는 검사 임용 일정 조정, 실무수습 일정 중복 문제 해결 방안 등 상호 협력 방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15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위·변조자 심의를 위한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심 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 이승호 원장(위원장), 서울시립대 김대환 원장, 한양대 김재봉 원장,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법전문원 입학전형시 위·변조된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위원회는 법학적성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이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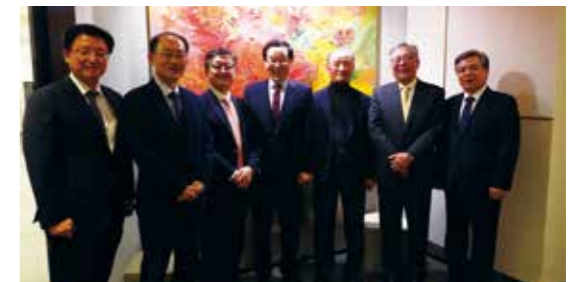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간담회 개최

11월 15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 측은 3주기 평가 기준이 과도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교수권과 학습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낮은 변시 합격률로 사실상 수험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이라는 내용을 변협 평가위측에 전달했다. 또한 '교육성과'항목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간담회 이후 김순석 이사장, 이승호 원장(건국대), 김대환 원장(서울시립대), 김재봉 원장(한양대), 김명기 사무국장은 T/F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변협 특별위원회 측에 전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 개최

11월 28일(목) 종로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단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호문혁 이사장, 김건식 이사장, 신현운 이사장, 오수근 이사장, 이형규 이사장, 김순석 이사장, 이승호 연구사업단장,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현안 사항을 비롯해 2020년에 새로이 진행될 연구과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법전문원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

12월 4일(수) 제주도에서 제47차 이사회 및 제50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25개교 법전문원 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전문원협의회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분기별로 수립하였다. 이 외에도 법전문원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 시험일시 : 2020. 8. 1.(토)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 시험과목 : 법조윤리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 원서접수 : 2020. 6. 26.(금) 09:00 ~ 7. 1.(수) 24:00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
- 응시수수료 :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합격발표 : 2020. 9. 16.(수)

2020 SSK 인권포럼- 휴먼아시아 대학(원)생 인권논문 공모전

- 공모주제 : 1) '아시아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권 보장을 촉진(혹은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해 탐색하는 논문
2) 인권의 영역(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북한인권, 국제개발협력, 기업과 인권, 환경권 등) 및 집단(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 성적소수자 등) 중 특정한 주제 및 대상을 선정하여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권함
- 신청접수 : 2019.12.1.(일) ~ 2020.1.19.(토)
- 제출기간 : 2020.2.28.(금)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SSK인권포럼 홈페이지 (<http://sskhumanrights.org/>)
- 논문제출방법 : 논문 파일 및 증빙 서류 이메일로 제출 (sskhrforum@gmail.com)
- 출품규격 : 한글 A4 15매 내외
- 수상발표 : 2020.3.31.(화) 오후 6시



Law Quiz



Q1 甲과 乙은 공모하여 2017. 1.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담당공무원 丙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甲만이 뇌물공여죄 혐의로 2017. 7. 6. 공소제기되어 1심을 거쳐, 2018. 4. 10.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甲에 대한 동 유죄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과 乙은 임의적 공범관계, 甲·乙과 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 ㄴ. 丙은 자신이 수수한 2,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이후 같은 액수의 돈을 甲과 乙에게 반환한 경우, 법원은 丙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 ㄷ. 丙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甲과 乙을 공갈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면 甲과 乙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ㄹ.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乙과 丙에게 미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Q2 서울시 교육청은 관할 사립 유치원 운영상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보조금 및 회계 관련법령을 위반한 비리유치원 및 운영자의 명단을 공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청의 명단공표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 ②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현장조사시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통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립 유치원 운영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여 명단공표를 저지할 수 없다.
- ④ 교육청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학부형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목적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언론사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립 유치원 운영자는 명단이 공표된 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명단공표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Q3 신주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기가 있으면 신주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④ 신주발행시 납입기일까지 아직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있는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 ⑤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허락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